

2 총회은급재단 보고

제106회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이 사 장 배광식

상임이사 고영기

1. 조 직

- 이 사 장 : 배광식
- 상임이사 : 고영기
- 이 사 : 권순웅 이남국 유장춘 권준호 김한성 정계규 육수복 정창수 김상윤 하재삼 권규훈
- 감 사 : 남수현 강성재

2. 회 의

1) 이사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10. 21(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신임이사장 배광식 목사가 취임 승낙 인사를 하니 참석자 전원이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항에 의거 이사장 됨을 결의하다.
- ② 법인현황 보고를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이사 김한성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③ 감사보고를 감사 강성재 장로가 보고하니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④ 연/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관련 소위원회[제106회기 제1차] 보고를 위원회 서기 이사 육수복 목사가 보고 하니 ②항의 연금대상자에 부부가 가입은 불가함을 허락하고 ①항은 차기 이사회에 재론하기로 하고 유지재단에 기금을 증액 청원하기로 이사 권준호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한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⑤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에 따라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및 접수된 내용증명을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추가 담보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법적시한까지 보내기로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⑥ 제105회기 결산 및 제106회기 예산(안)을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⑦ 기금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연금 I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연금 II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개인 연금 대출규정(안)에 대하여는 차기 이사회에서 재론하기로 이사 권준호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한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12. 16(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연/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관련 소위원회[제106회기 제2차] 보고를 위원회 서기 이사 육수복 목사가 보고 하니 총회에서 위임 받은 “총회연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세부안을 작성 중인 총회 3인 위원들과 연석회의 후 재론하기로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한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② 소송 진행 보고를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③ 임원선임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임원 추천의 건을 근거로 권순웅 목사(평서노회, 주다산교회), 권규훈 목사(남울산노회, 변영로교회), 하재삼 목사(김제노회, 영광교회), 김상운 목사(황동노회, 나눔의교회)를 이사로 강성재 장로(황동노회, 남현교회)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한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④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에 따라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및 접수된 내용증명을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추가 담보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법적시한까지 보내기로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⑤ 제106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에 대하여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⑥ 연금 I 2022년 표준급여표(안)에 대하여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전년대비 1%(1인)을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⑦ 연금 II 적용금리에 따른 연금납입액 현황을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현재 적용금리를 동결하여 2022년 1월부터 2.9%(1인)을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한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⑧ 가입 독려를 위하여 봄/가을 정기노회 시 이사 및 직원들이 노회에 방문하여 홍보하기로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2. 3. 24(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법안현황 보고를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이사 유장춘 목사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② 감사 보고를 감사 강성재 장로가 보고하니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③ 소송 진행 보고 및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에 따라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및 접수된 내용증명을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소송 진행 보고는 받고 최춘경측에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이사 이남국 목사와 이사 유장춘 목사, 실무국장에게 맡겨

담보 가치에 대하여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한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2. 4. 25(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연/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관련 소위원회(제106회기 제3차) 보고를 위원장 이남국 목사가 보고 하니 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연금 I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연금 II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개인 연금 대출규정(안)을 별지[3. 사업보고 1)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각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이사 하재삼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②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 담보 관련 소위원회(제106회기 제1차) 및 법인측에서 발송한 내용 증명과 접수된 내용증명을 이사 이남국 목사로부터 보고 받다.
매수자(최춘경)가 담보로 제시한 중앙추모공원 연천 소재 현장 방문에 대하여 이사 이남국 목사가 보고하니 법적으로 담보 물건에 대하여 법률 검토 후 시행하기로 이사 김상운 목사의 동의와 이사 하재삼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③ 은급재단 정관 심의 결과 통지 건을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니 내용 중 제6장 제34조 재척이사가 아닌 재척이사임을 확인하고 현 정관 대로 시행하기로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④ 세례교인현금 5% 지원 및 총회 총대 총회연기금의무가입에 대하여 필요 시 규정 개정을 소위원회에 맡기기로 이사 김상운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2. 8. 23(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은급재단 현황을 실무국장이 보고하니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2022.03.24.) 결의를 근거로 총회가 세례교인현금의 5%를 총회교역자연기금지원금으로 요청하기로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② 제106회기 제4차 이사회 ②항 결의를 근거로 중앙추모공원(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유로 58-38 소재)의 추가담보 이행각서를 실무국장이 보고하니 이사 정계규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2) 연/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10. 14(목) 16: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기금규정(개정안) 26조[은퇴기금급여의산정] 추가 ⑤항“은퇴기금급여는 수급 기간 10년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11년차부터는 매년 10%씩 하향하여 지급한다. 단, 기존 수급자는 최초 지급월 기준으로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에 대해 본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유장춘 목사의 동의와 이남국 목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 ② 연금 I/연금 II 가입대상자에서 부부가 함께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이 불허됨을 규정에 삽입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육수복 목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12. 10(목) 13:4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연금 부부 가입 불가함에 대한 연금 I 규정 제5조[가입대상], 연금 II 제4조[가입대상]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다.
- ② 기금규정 개정(안) 제26조[은퇴기금급여의산정] ⑤항“은퇴기금급여는 수급 기간 10년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11년차부터는 매년 10%씩 하향하여 지급한다. 단, 현재 수급자도 최초 받은 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의하다.
- ③ 총회에서 위임 받은 “총회연금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세부안을 작성중인 위원(목사부총회장, 회록서기, 회계, 총무)들과 연석회의를 요청하기로 결의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2. 4. 5(화) 13:5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연금 I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연금 II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개인 연금 대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대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3)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 담보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2. 4. 5(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법인측 담보요청에 대하여 최춘경측과 진행사항을 실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다.
- ② 벽제중앙추모공원은 제105회 제4회 이사회(2021.09.02.) 결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중앙추모공원(연천군 미산면 마유로 소재)에 대하여 최춘경측으로부터 담보 제공 세부 계획(안)을 받기로 결의하다.

3. 사업보고

1)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1) 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기금 규정

현 행	개 정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역자 및 총회직원과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퇴직”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 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수급자”라 함은 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추 가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가입기관과 가입기간</p>		
<p>제4조[가입자격과 취득시기] 가입 자격은 소속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이 납부된 날부터 취득한다.</p>	<p>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p>	추 가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신 고</p>		
<p>제6조[신고] 가입기관은 자격의 상실이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가입기관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이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한다.</p>	수 정
<p>제7조[통지] 재단은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상실된 자에게는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재단은 제4조 규정에 의한 가입의 허락은 1개월 이내에 통지하고 제5조 규정에 의한 미납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년 2회 납입현황을 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수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재 정</p>		
<p>제8조[납입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은급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회는 1년 예산의 0.2%를, 총회는 1년 예산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저납부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총회산하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년 매 출액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기독신문, 유지재단 등) ③ 총회산하 지 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 한 당해년도 예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총회산하 지 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 한 당해년도 예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 정
<p>제10조[장기 미납입 연체 기관에 대한 재시작] 규정 제5조 3항에 의해 기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교회 및 기관</p>	<p>규정 제5조 3항에 의해 자격이 상실한 교회 및 기관 중 5년 이상 미납에 한하여 기금을</p>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p>중 현재 5년 이상 장기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에 한하여, 교회의 담임 교역자 또는 기관의 대표가 교체됨으로 인해 새롭게 기금을 재시작할 경우 재단의 승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금납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p>	<p>재 납부를 원할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중지기간으로 한다. 단, 중지기간은 기금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p>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p>	<p>매 회계년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p>	수 정
<p>제12조 [회계년도] 이 기금 회계의 회계년도는 총회 회계년도에 따른다.</p>	<p>제12조 [회계년도] 이 기금의 회계년도는 총회 회계년도에 따른다.</p>	수 정 수 정
<p>제 5 장 급 여</p>		
<p>제 1 절 급 여</p>	<p>제 1 절 통 칙</p>	
<p>제16조[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p> <p>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했던 노회장(기관장)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단 본인이 노회장(기관장)일 경우 서기의 확인서로 한다.</p> <p>② 기금 수급권자는 매 연도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했던 노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p> <p>③ 수급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한다.</p>	수 정 추 가 추 가
<p>제18조[급여의 지급]</p> <p>① 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 단, 은퇴기금의 경우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 한 달까지 지급한다.</p> <p>②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p> <p>③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p> <p>④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p>① 은퇴기금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p> <p>② 은퇴일시금기금급여는 지급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한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p> <p>③</p> <p>④</p> <p>⑤</p> <p>⑥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p>	수 정 추 가 수 정 수 정 수 정 추 가

현 행	개 정	비 고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소천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로 판정한다.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 정
제20조[수급권자의 범위] 미지급의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민법 상속 순위(이하 같다)에 의한다.		삭 제
제21조[미지급금 또는 과지급금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명의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20조[미지급금 또는 과지급금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 정 수 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	수 정
제23조[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수급권의 보호]	수 정
제24조[서류제출] ① 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완결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제출]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완결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한다.	수 정 수 정
제 2 절 은퇴기금급여		
제25조[은퇴기금급여]	제24조[은퇴기금급여]	수 정



현행	개정	비고
<p>① 기금을 납부한 <u>총회와 산하기관 및 교회 담임교역자</u>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만70세 이상이 되면 급여를 지급한다.</p> <p>② 만 65세 이전 은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 은퇴자는 만 70세에 지급한다.</p> <p>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상시 근무자는 정년에 은퇴한자에 한해서 만 70세에 지급한다.</p>	<p>① 기금을 납부한 <u>교회 담임교역자</u>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u>만70세 정년 은퇴하면</u> 급여를 지급한다. 시행세칙 제4조 ①항에 따른다.</p>	수정 삭제
<p>제26조(은퇴기금급여의 산정)</p> <p>① 은퇴기금급여의 혜택은 연금급여(은퇴연금, 특례연금) 수혜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 납입 년수×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최대 지급액은 100,000원에 한한다.)</p> <p>② 기금 납입 년수는 연금 납입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p> <p>③ 은퇴기금급여의 수혜자는 연금 I 가입자로 한정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p>	<p>제25조(은퇴기금급여의 산정)</p> <p>① 은퇴기금급여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 납입 년수×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최대 지급액은 100,000원에 한한다.)</p> <p>③ 은퇴기금급여의 수급자는 연금 I 가입자로 한정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2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만 65세 이전 은퇴자 및 총회 및 산하 기관 상시 근무자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라도 은퇴일시금기금급여로 지급한다.</p> <p>⑤ 은퇴기금급여는 수급 기간 10년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11년차부터는 매년 10%씩 하향하여 지급한다. 단, 현재 수급자도 최초 받을 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p>	수정 추가 추가
<p>제27조(은퇴일시금기금급여의 산정)</p> <p>① 은퇴일시금기금급여 혜택은 연금 I 가입자로서 연금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혜자 또는 연금 II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납입 년수×1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p> <p>② 기금 납입 년수는 연금 납입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p>	<p>제26조(은퇴일시금기금급여의 산정)</p> <p>① 은퇴일시금기금급여는 연금 I 가입자로서 연금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이거나 연금 II 가입자로 은퇴급여(은퇴연금, 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에 한하여 은퇴할 경우 기금 납입 년수×1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p>	수정 수정
<p>제28조【은퇴기금급여 특례】</p> <p>제85회 총회 이전의 수급권자는 제26조에 의하여 기금 납입 년수 ×1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p>		삭제
	제 6 장 보 칙	추가

현 행	개 정	비 고
	제27조[시효] 이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추 가
	제2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추 가
1. 부 칙		
이 규정은 제96회 총회(2011.9)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수 정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	추 가
제 정 1992. 9. 전문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 부분개정 2005. 9. 부분개정 2006. 9. 부분개정 2011. 9.	제 정 1992. 9. 전문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 부분개정 2005. 9. 부분개정 2006. 9. 부분개정 2011. 9. 부분개정 2022. 4.	

(2) 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기금 시행세칙

현 행	개 정	비 고
제 2 장 가 입		
제3조[자격중단]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중단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삭 제
제 3 장 신 고		
제4조[신고] ①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 기관 또는 기금 수령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적 2. 개명 3. 주소변경 4. 사망(기금수령자)	제3조[신고]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기관 또는 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상실 2. 전적 3. 개명 4. 주소변경 5. 사망(기금수급자)	수 정 수 정 및 추 가



현 행	개 정	비 고
제 4 장 급 여		
<p>제5조[급여사유 확인]</p> <p>① 규정 제1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소속했던 노회의 서식에 의한다.</p> <p>② 규정 제1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에 있어서 급여를 받을 자의 자격 또는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4조[급여사유 확인]</p> <p>규정 제1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은퇴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로 소속노회(기관)의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p> <p>②</p>	<p>수 정 수 정</p> <p>삭 제</p>
<p>제6조[실종신고]</p> <p>① 규정 제1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p>		<p>삭 제</p>
<p>제7조[부당이득의 환수]</p> <p>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시의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로 적용한다.</p>	<p>제5조[부당이득의 환수]</p> <p>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시의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로 적용한다.</p>	<p>수 정</p>
<p>제8조[납입방법]</p> <p>① 규정 제9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지로입금번호 : 7607231 2. 우체국온라인입금번호 : 012765-01-006015 (재)예장총회 은급재단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은행지로 입금증, 은행 온라인 영수증으로 납입금 영수증을 갈음한다.</p>	<p>제6조[납입방법]</p>	<p>수 정</p>
	<p>제7조[회계연도]</p> <p>규정 제12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2년 회계연도(2021.9.1~2022. 8. 31)</p>	<p>추 가</p>
2. 부 칙		
<p>이 시행세칙은 제96회 총회(2011.9)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p> <p>이 시행세칙은 기금 규정 시행일로 시행한다.</p>	<p>수 정</p>
<p>제 정 1993. 9. 전문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p>	<p>제 정 1993. 9. 전문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p>	

현 행	개 정	비 고
부분개정 2005. 9. 부분개정 2006. 9. 부분개정 2011. 9.	부분개정 2005. 9. 부분개정 2006. 9. 부분개정 2011. 9. 부분개정 2022. 4.	

(3) 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연금 | 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 1 장 총 칙		
제3조[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 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 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수 정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 로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 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 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 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수 정
4. “월보수액”이라 함은 재단이 매년 공시 하는 표준급여표에 근거하여 가입자가 납입하는 납입금의 기준이 되는 해당 급수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은퇴연금, 유 족연금, 특례연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 로써 연도별 총 납입액을 해당 연도별 납입률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별 총합 을 다시 총 납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평균보수월액} = \frac{\sum_{\text{가입년도}} \text{최종납입년수} \times \text{연도별납입액}}{\sum_{\text{가입년도}} \text{연도별납입률}} \times \frac{1}{\text{총납입월수}}$		
6. “납입금”이라 함은 연금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 는 금액을 말한다.	7. “수급자”라 함은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	추 가



현 행	개 정	비 고
<p>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p>	<p>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p>	수 정
제 2 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p>제5조[가입대상]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p>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GMS소속 선교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수 정 수 정
<p>제6조[가입자격과 취득시기] 연금 가입자격은 관련서류를 제출 후 최초 납부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p>	<p>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 서류를요청할 수 있다.</p>	추 가
<p>제7조[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소속기관에서 완전 퇴직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u>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u> 	수 정
<p>제8조[자격의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고에 따라 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중단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구, 폐질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시무처 이동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긴급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시행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수 정 수 정
제 3 장 신 고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3조[신고] 가입자는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과 같이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p>	<p>가입자는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과 같이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한다.</p>	수 정
제 4 장 재 정		
<p>제15조[납입금] ① 재단은 이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급여표의 월보수액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은 2012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100분의 1씩 상향 조정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향 조정 반영)</p>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급여표의 월보수액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10로 한다. ③ 적용비율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00분의 5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0분의 1씩 상향 조정하였다. (최종 100분의 10로 현재까지 반영)</p>	수 정 수 정
<p>제20조[회계연도] 연금 회계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20조[회계연도] 이 연금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p>	수 정 수 정
제 5 장 급 여		
제 1 절 통 칙		
<p>제23조[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연금 수급권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금 수급권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p>	<p>제23조[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재단은 소속 노회(기관)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금 수급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p>	수 정 추 가 수 정 수 정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급여의 지급]		
① 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 단, 은퇴연금의 경우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 특례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단, 은퇴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수 정
②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연금공제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추 가
③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③	수 정
④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④	수 정
	⑤	수 정
	⑥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추 가
제27조[사망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 정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비 고
<p>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p>		
<p>제28조[수급권자의 범위]</p> <p>① 미지급의 급여 또는 제22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민법 상속순위(이하 같다)에 의한다.(단, 제22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p>	<p>제28조[수급자의 범위]</p> <p>① 미지급의 일시금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단, 제22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p>② 제①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균분하여 지급한다.</p>	<p>수 정</p> <p>추 가</p>
<p>제29조[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p> <p>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명의로 그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p>	<p>① 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는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p>	<p>수 정</p>
<p>제32조[수급권자의 보호]</p> <p>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p>	<p>제32조[수급자의 보호]</p>	<p>수 정</p>
제 2 절 은퇴급여		
<p>제34조[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p> <p>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퇴직하고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은퇴연금공제일시금(이하“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p>	<p>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은퇴연금공제일시금(이하“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p>	<p>수 정</p> <p>수 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제35조[은퇴연금의 산정]</p> <p>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인 자로서 만70세 이상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 은퇴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①항의 상당하는 금액에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1의 금액을 가산한다.</p> <p>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만 65세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65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만66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만67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만68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만69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p>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만 65세에 달하여 <u>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 신청 당시 연령 기준으로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고정으로 지급한다.</u> 다만, 퇴직할 때 연령이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p>	수 정
<p>제39조[은퇴연금일시금의 특례]</p> <p>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수령 개시 전 규정 제8조 1, 2, 3호에 해당된 때에는 규정 제34조 제①항에 불구하고 중단기간이 1년 경과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 <u>이었던</u> 자가 만 70세 미만에 퇴직 시에는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u>가입자가</u> 만 70세 미만에 퇴직 시에는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수 정
제 3 절 장애급여	제 3 절 장애일시금	수 정
<p>제40조[장애일시금]</p> <p>① 연금 납입액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그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당한 때에는 치료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장애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p>	<p>제40조[장애일시금]</p> <p>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p> <p>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p>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p>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 등급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p>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p> <p>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으로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p>	
제 4 절 유족급여		
<p>제42조[유족연금의 수급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만 65세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2. 은퇴연금 수급권 자 	<p>제22조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p>	수 정 삭 제 삭 제
<p>제44조[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p>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소멸한다.</p>	수 정
<p>제45조[사망일시금]</p> <p>① 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p> <p>② 연금 수령 개시 전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갈음하여 규정 제 43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만 65세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p>	수 정 삭 제
제 5 절 특례연금		
<p>제49조[특례연금액의 산정]</p> <p>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입기간이 만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납입기간이 만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현 행	개 정	비 고
<p>3. 납입기간이 만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p> <p>4. 납입기간이 만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p> <p>5. 납입기간이 만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p> <p>② 특례연금 해당자가 만65세에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35조 제③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② 특례연금 해당자가 만65세에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제35조 제③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p>	수 정
제 6 장 급여의 제한		
<p>제50조[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최종 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 2.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 3. 중도 해약을 원하는 자 	<p>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p>	수 정
<p>제52조[지급의 환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정 제31조 부당이익의 환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장애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수급권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급여의 수급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수 정
제 7 장 보 칙		
<p>제54조[권익보호] 이 규정에 의하여 수급을 받는 자에게 규정을 변경 또는 신 규정을 제정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p>		삭 제
<p>제55조[소급적용의 제한] 납입기간 소급적용은 제85회 총회 이전 소급 신청자로 한정하여 인정한다.</p>		삭 제
<p>제56조[월보수액 인상의 제한] 가입자가 월보수액 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월보수액에서 직 상위 월보수액으로</p>	<p>제54조[월보수액 인상의 제한] 가입자가 월보수액 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월보수액에서 직 상위 월보수액으로</p>	수 정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p>하되 현 월보수액으로 1년 이상 납입한 이후여야 한다. 다만 시무지 이전으로 인한 월보수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2급간 내의 인상을 할 수 있다.</p>	<p>하되 현 월보수액으로 1년 이상 납입한 이후여야 한다. 다만 시무지 이전으로 인한 월보수액의 변동이 있을 때는 2급간 내의 인상을 할 수 있다.</p>	
<p>제57조[급수조정] 월보수액이 적용 급수를 초과하는 가입자는 계속가입 기간 5년이 경과 할 때마다 전년도 납입 급수와 다음해의 직상위 급수로 계산된 차액을 2급수 이내의 인상을 할 수 있다.</p>	<p>제55조[급수조정]</p>	수 정
<p>제58조[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4항에 의한 국적상실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 및 특례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p>제56조[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 및 특례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수 정 수 정 수 정
<p>제5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p>제57조[시행세칙]</p>	수 정
3. 부 칙		
<p>이 규정은 제96회 총회(2011.9)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은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p>	수 정
	<p>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p>	추 가
<p>제 정 1992. 9. 부분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 부분개정 2005. 9.</p>	<p>제 정 1992. 9. 부분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 부분개정 2005. 9.</p>	



현 행	개 정	비 고
부분개정 2006. 9. 부분개정 2011. 9.	부분개정 2006. 9. 부분개정 2011. 9. 부분개정 2022. 4.	

(4) 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연금 | 시행세칙

현 행	개 정	비 고
제 1 장 총 칙		
제3조[재평가에 의한 평균보수월액 계산]		
① 규정 제24조의 평균 보수월액의 계산은 매년 한 급씩 인상하는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56조에 의한 월보수액 인상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 해 12월 말일 이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준 상승률에 미달인 경우 전체 납입기간의 3분의1이상 해당 된 때에도 급여의 변동률이 표준 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가입자로 본다. ⑤ 급수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54조에 의한 월보수액 인상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 해 12월 말일 이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 정
제 2 장 가 입		
제6조[자격중단]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중단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삭 제
제7조[계속가입]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가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삭 제
제 3 장 신 고		
제8조[신고]		
①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령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중단 2. 자격 상실 3. 개명 4. 근무지 이동	제6조[신고]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중단 2. 자격 상실 3. 전직 4. 개명 5. 근무지 이동	수 정 및 추 가

현 행	개 정	비 고
<p>5. 주소 변경 6. 혼인(연금수령자) 7. 사망(연금수령자) 8. 기타</p>	<p>6. 주소 변경 7. 혼인(연금수급자) 8. 사망(연금수급자) 9. 기타</p>	
제 4 장 급 여		
<p>제9조[급여사유 확인] ① 규정 제2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3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에 있어 급여를 받을 자의 자격 또는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p>	<p>제7조[급여사유 확인] ① 규정 제2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3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기관에서 발급한 은퇴확인서 및 소속증명서로 한다.</p>	<p>수 정 수 정 추 가 삭 제</p>
<p>제10조[급여선택의 신고] 규정 제2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선택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급여선택의 신고] 규정 제22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할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수 정 수 정</p>
<p>제11조[실종신고] 1. 규정 제27조 제①항에 의한 실종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2. 규정 제27조 제③항에 의한 환수 조치시의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을 준용한다.</p>	<p>제9조[실종신고] 규정 제27조 제③항에 의한 환수 조치시의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을 준용한다.</p>	<p>수 정 삭 제 수 정</p>
<p>제12조[수급순위] 규정 제28조 제①항에 의한 민법 상속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한다.</p>		<p>삭 제</p>
<p>제13조[미지급의 신청] 규정 제29조 제①항에 의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라 함은 세칙 제12조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p>		<p>삭 제</p>
<p>제14조[부당이익의 환수] 규정 제31조 및 제52조에 의한 환수시의 이자율은 세칙 제11조 제②항을 준용한다.</p>	<p>제10조[부당이익의 환수] 규정 제31조 및 제52조에 의한 환수시의 이자율은 세칙 제9조에 준용한다.</p>	<p>수 정 수 정</p>
<p>제15조[사망일시금 신청] 규정 제45조 제①항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p>	<p>제11조[사망일시금 신청] 규정 제45조 제①항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p>	<p>수 정 수 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6조[장애일시금 신청] 규정 제40조 제①항에 의한 장애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p>	<p>제12조[장애일시금 신청] 규정 제45조 제①항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p>	수 정 수 정
<p>제17조[장애등급] 규정 제40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별지 제9호 표와 같다</p>	<p>제13조[장애등급인정] 규정 제40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u>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u></p>	수 정 수 정
<p>제18조[장애등급 심사] 재단은 아래와 같이 장애등급을 심사할 수 있다. ① 규정 제40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정도의 심사는 재단에서 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의 적당한 심사를 위하여 <u>이사회는 장애 심사위원을 두거나 자문의사를 위촉 할 수 있다.</u> ③ 재단은 제①항의 장애 정도의 심사에 앞서 재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p>		삭 제
<p>제19조[장례비] 규정 제47조에 의한 장례비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p>	<p>제14조[장례비] 규정 제47조에 의한 장례비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p>	수 정 수 정
<p>제20조[특례연금] 규정 제48조에 의한 특례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p>	<p>제15조[특례연금] 규정 제48조에 의한 특례연금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p>	수 정 수 정
<p>제21조[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 ① 가입기간 중 규정 제18조, 제50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 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총 납입금에 적용하여 그 원리금에서 최초 가입 시 월보수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 적용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해약환급금 = $\text{총 납입금의 원리금} - \frac{12 \times 10\text{년} - t}{12 \times 10\text{년}} \times \text{최초 가입시 보수액}$ (1) t : 납입경과 월수 (2) 단, 납입기간 10년 초과시엔 $\frac{12 \times 10\text{년} - t}{12 \times 10\text{년}} \times \text{최초 가입시 월보수액} = 0$ 으로 함.</p>	<p>제16조[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p>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p>② 제①항의 최초 가입 시 월보수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하는 금액을 해약공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p> <p>제22조 [이자율]</p> <p>① 규정 제 18 조, 제 50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9 호 서식으로 한다.</p> <p>② 세칙 제 21 조의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납입 년수에 해당하는 연 기준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납입년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body> </table> <p>③ 규정 제 38 조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40 조의 제①항 장애일시금 규정에 근거하여 납입 년수 미달로 인하여 은퇴 일시금, 장애일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②항에서 적용한 해약환급금의 연 기준 적용이자율을 반영하여 원리금으로 산정한다.(단, 해약공제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p> <p>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 38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46조의 사망 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연 기준 적용 이자율을 반영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p> <p>1. 은퇴연금일시금</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납입년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이자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납입년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안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d style="text-align: center;">3.3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95%</td> <td style="text-align: center;">29</td> <td style="text-align: center;">3.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3.4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d style="text-align: center;">3.05%</td> <td style="text-align: center;">31</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td> <td style="text-align: center;">3.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3.5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d style="text-align: center;">3.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3.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4</td> <td style="text-align: center;">3.6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d style="text-align: center;">3.25%</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d style="text-align: center;">3.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7</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2.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p>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10년 이하	1.0%	10년 초과	1.5%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20년 미만	적용 안함	28	3.35%	20	2.95%	29	3.40%	21	3.00%	30	3.45%	22	3.05%	31	3.50%	23	3.10%	32	3.55%	24	3.15%	33	3.60%	25	3.20%	34	3.65%	26	3.25%	35	3.70%	27	3.30%	-	-	<p>제17조 [이자율]</p> <p>① 규정 제 18 조, 제 50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5 호 서식으로 한다.</p>	수 정 수 정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10년 이하	1.0%																																															
10년 초과	1.5%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20년 미만	적용 안함	28	3.35%																																													
20	2.95%	29	3.40%																																													
21	3.00%	30	3.45%																																													
22	3.05%	31	3.50%																																													
23	3.10%	32	3.55%																																													
24	3.15%	33	3.60%																																													
25	3.20%	34	3.65%																																													
26	3.25%	35	3.70%																																													
27	3.30%	-	-																																													



현 행		개 정		비 고																																																																																																																																																				
<p>(단, 규정 제38조의 ①항에 근거하여 납입 년수 5년 미만의 경우 은퇴일시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적용 이자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납입년수</th> <th>적용 이자율</th> <th>납입년수</th> <th>적용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td>1</td><td>2.00%</td><td>18</td><td>2.65%</td></tr> <tr><td>2</td><td>2.00%</td><td>19</td><td>2.70%</td></tr> <tr><td>3</td><td>2.00%</td><td>20</td><td>2.75%</td></tr> <tr><td>4</td><td>2.00%</td><td>21</td><td>2.80%</td></tr> <tr><td>5</td><td>2.00%</td><td>22</td><td>2.85%</td></tr> <tr><td>6</td><td>2.05%</td><td>23</td><td>2.90%</td></tr> <tr><td>7</td><td>2.10%</td><td>24</td><td>2.95%</td></tr> <tr><td>8</td><td>2.15%</td><td>25</td><td>3.00%</td></tr> <tr><td>9</td><td>2.20%</td><td>26</td><td>3.05%</td></tr> <tr><td>10</td><td>2.25%</td><td>27</td><td>3.10%</td></tr> <tr><td>11</td><td>2.30%</td><td>28</td><td>3.15%</td></tr> <tr><td>12</td><td>2.35%</td><td>29</td><td>3.20%</td></tr> <tr><td>13</td><td>2.40%</td><td>30</td><td>3.25%</td></tr> <tr><td>14</td><td>2.45%</td><td>31</td><td>3.30%</td></tr> <tr><td>15</td><td>2.50%</td><td>32</td><td>3.35%</td></tr> <tr><td>16</td><td>2.55%</td><td>33</td><td>3.40%</td></tr> <tr><td>17</td><td>2.60%</td><td>34</td><td>3.45%</td></tr> </tbody> </table> <p>3. 장애일시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납입년수</th> <th>장애1급</th> <th>장애2급</th> <th>장애3급</th> </tr> </thead> <tbody> <tr><td>1</td><td>적용 안함</td><td>적용 안함</td><td>적용 안함</td></tr> <tr><td>2</td><td>2.00%</td><td>1.900%</td><td>1.80%</td></tr> <tr><td>3</td><td>2.00%</td><td>1.900%</td><td>1.80%</td></tr> <tr><td>4</td><td>2.00%</td><td>1.900%</td><td>1.80%</td></tr> <tr><td>5</td><td>2.00%</td><td>1.900%</td><td>1.80%</td></tr> <tr><td>6</td><td>2.05%</td><td>1.945%</td><td>1.84%</td></tr> <tr><td>7</td><td>2.10%</td><td>1.990%</td><td>1.88%</td></tr> <tr><td>8</td><td>2.15%</td><td>2.035%</td><td>1.92%</td></tr> <tr><td>9</td><td>2.20%</td><td>2.080%</td><td>1.96%</td></tr> <tr><td>10</td><td>2.25%</td><td>2.125%</td><td>2.00%</td></tr> <tr><td>11</td><td>2.30%</td><td>2.170%</td><td>2.04%</td></tr> <tr><td>12</td><td>2.35%</td><td>2.215%</td><td>2.08%</td></tr> <tr><td>13</td><td>2.40%</td><td>2.260%</td><td>2.12%</td></tr> <tr><td>14</td><td>2.45%</td><td>2.305%</td><td>2.16%</td></tr> <tr><td>15</td><td>2.50%</td><td>2.350%</td><td>2.20%</td></tr> <tr><td>16</td><td>2.55%</td><td>2.395%</td><td>2.24%</td></tr> <tr><td>17</td><td>2.60%</td><td>2.440%</td><td>2.28%</td></tr> <tr><td>18</td><td>2.65%</td><td>2.485%</td><td>2.32%</td></tr> </tbody> </table>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1	2.00%	18	2.65%	2	2.00%	19	2.70%	3	2.00%	20	2.75%	4	2.00%	21	2.80%	5	2.00%	22	2.85%	6	2.05%	23	2.90%	7	2.10%	24	2.95%	8	2.15%	25	3.00%	9	2.20%	26	3.05%	10	2.25%	27	3.10%	11	2.30%	28	3.15%	12	2.35%	29	3.20%	13	2.40%	30	3.25%	14	2.45%	31	3.30%	15	2.50%	32	3.35%	16	2.55%	33	3.40%	17	2.60%	34	3.45%	납입년수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1	적용 안함	적용 안함	적용 안함	2	2.00%	1.900%	1.80%	3	2.00%	1.900%	1.80%	4	2.00%	1.900%	1.80%	5	2.00%	1.900%	1.80%	6	2.05%	1.945%	1.84%	7	2.10%	1.990%	1.88%	8	2.15%	2.035%	1.92%	9	2.20%	2.080%	1.96%	10	2.25%	2.125%	2.00%	11	2.30%	2.170%	2.04%	12	2.35%	2.215%	2.08%	13	2.40%	2.260%	2.12%	14	2.45%	2.305%	2.16%	15	2.50%	2.350%	2.20%	16	2.55%	2.395%	2.24%	17	2.60%	2.440%	2.28%	18	2.65%	2.485%	2.32%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1	2.00%	18	2.65%																																																																																																																																																					
2	2.00%	19	2.70%																																																																																																																																																					
3	2.00%	20	2.75%																																																																																																																																																					
4	2.00%	21	2.80%																																																																																																																																																					
5	2.00%	22	2.85%																																																																																																																																																					
6	2.05%	23	2.90%																																																																																																																																																					
7	2.10%	24	2.95%																																																																																																																																																					
8	2.15%	25	3.00%																																																																																																																																																					
9	2.20%	26	3.05%																																																																																																																																																					
10	2.25%	27	3.10%																																																																																																																																																					
11	2.30%	28	3.15%																																																																																																																																																					
12	2.35%	29	3.20%																																																																																																																																																					
13	2.40%	30	3.25%																																																																																																																																																					
14	2.45%	31	3.30%																																																																																																																																																					
15	2.50%	32	3.35%																																																																																																																																																					
16	2.55%	33	3.40%																																																																																																																																																					
17	2.60%	34	3.45%																																																																																																																																																					
납입년수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1	적용 안함	적용 안함	적용 안함																																																																																																																																																					
2	2.00%	1.900%	1.80%																																																																																																																																																					
3	2.00%	1.900%	1.80%																																																																																																																																																					
4	2.00%	1.900%	1.80%																																																																																																																																																					
5	2.00%	1.900%	1.80%																																																																																																																																																					
6	2.05%	1.945%	1.84%																																																																																																																																																					
7	2.10%	1.990%	1.88%																																																																																																																																																					
8	2.15%	2.035%	1.92%																																																																																																																																																					
9	2.20%	2.080%	1.96%																																																																																																																																																					
10	2.25%	2.125%	2.00%																																																																																																																																																					
11	2.30%	2.170%	2.04%																																																																																																																																																					
12	2.35%	2.215%	2.08%																																																																																																																																																					
13	2.40%	2.260%	2.12%																																																																																																																																																					
14	2.45%	2.305%	2.16%																																																																																																																																																					
15	2.50%	2.350%	2.20%																																																																																																																																																					
16	2.55%	2.395%	2.24%																																																																																																																																																					
17	2.60%	2.440%	2.28%																																																																																																																																																					
18	2.65%	2.485%	2.32%																																																																																																																																																					

현 행				개 정	비 고
19	2.70%	2.530%	2.36%		
20	2.75%	2.575%	2.40%		
제 5 장 재 정					
제23조[표준급여표] 규정 제1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급여표는 별지 제11호 표와 같다. 다만, 전국 교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급여를 추가 설정할 수 있다.				제18조[표준급여표] 규정 제1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급여표는 별지 제6호 표와 같다. 다만, 전국 교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급여를 추가 설정할 수 있다.	수 정 수 정
제24조[납입기일] ①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납입 내용 기입 가. 소속 기관명 나. 직명 다. 성명 라. 가입 번호 마. 납입 해당월(소급 납입액이 있을 때는 그 사유 포함) 바. 납입 금액(소급 납입액이 있을 때는 그 사유 포함) 3. 납입 방법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같은 한다.				제19조[납입기일] ①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가입내용 기입 가. 소속(기관명) 나. 성명 다. 회원번호 라. 가입일 마. 납입월 바. 납입금액 3. 납입 방법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같은 한다.	수 정 수 정
제25조[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재단은 규정 제18조에 의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개인 연금 대출 이율 -2%'를 준용한다.				제20조[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수 정
제26조[회계년도] 규정 제20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12년 회계년도(2011.9.1~2012. 8. 31)				제21조[회계연도] 규정 제20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2년 회계연도(2021.9.1~2022. 8. 31)	수 정 수 정
제 6 장 보 칙					
제27조[국적상실자 등] 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				제22조[국적상실자 등] 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	수 정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에 대한 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에 대한 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4. 부 칙		
이 규정은 제96회 총회(2011.9)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연금 I 규정 시행일로 시행한다.	수 정 수 정
제 정 1993. 9. 부분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 부분개정 2005. 9. 부분개정 2006. 9. 부분개정 2011. 9.	제 정 1993. 9. 부분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 부분개정 2005. 9. 부분개정 2006. 9. 부분개정 2011. 9. 부분개정 2022. 4.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9호〉</p>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 등급 표</p> <p>1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자 2.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4.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6.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기 못하는 자 8.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9.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상 간호 또는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0.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간호하 		삭 제

현 행	개 정	비 고
<p> <u>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u> </p> <p>2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u> 2. <u>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u> 3. <u>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u> 4. <u>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u> 5. <u>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u> 6. <u>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u> 7. <u>양쪽의 리스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u> 8. <u>위의 1내지 7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u> <p>3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 자</u> 2. <u>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자</u> 3. <u>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u> 4. <u>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u> 5. <u>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u> 6. <u>한손의 5손가락을 잃은 자</u> 7. <u>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은 자</u> 8. <u>10발가락을 잃은 자</u> 9. <u>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가진 자</u>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u>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u> 		



현 행	개 정	비 고
<p>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p> <p>1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p> <p>12. 위의 1내지 11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p> <p>13.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p> <p>14.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든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p>		

(5) 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연금 II 규정

현 행	개 정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3조[정의]</p> <p>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전도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p> <p>3. “퇴직”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p> <p>4. “납입금”이라 함은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5. “연금개시”이라 함은 가입자가 생존 시</p>	<p>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p> <p>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p>	<p>수 정</p> <p>수 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에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초의 기준시점으로써, 가입 시에 60세, 65세, 70세 중에 한 가지로 가입자가 설정한 것을 말한다.</p> <p>6. “보증지급기간”이라 함은 연금개시 이후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재단이 은퇴연금을 보장하는 최소한 지급기간을 말한다.</p> <p>7. “월납입금 인상률”이라 함은 매년 월납입금을 인상해서 납입할 수 있는 설정 비율을 말한다.</p> <p>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p>	<p>6.</p> <p>7. “수급자”라 함은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p>	<p>삭 제</p> <p>수 정</p> <p>추 가</p> <p>수 정</p>
제 2 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p>제4조[가입대상]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p>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u>단,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u>GMS소속 선교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u> 	<p>수 정</p> <p>수 정</p>
<p>제5조[가입자격과 취득시기] 연금 가입자격은 관련서류를 제출 후 최초 납부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p>	<p><u>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u></p>	<p>추 가</p>
<p>제6조[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u>소속기관에서 완전 퇴직한 때</u>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u>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u> 	<p>수 정</p>
	<p>제7조[자격의 중단]</p>	<p>추 가</p>



현 행	개 정	비 고
	2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제7조[가입기간]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월납입금을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제6조 규정에 의한 가입자격을 상실한 달까지로 한다.	제8조[가입기간]	수 정
제8조[가입기간의 특례] 연금가입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연금개시일 직전월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제9조[가입기간의 특례]	수 정
제9조[납입기간의 계산]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연금개시일 전월까지 전기에 걸쳐서 납입한다.	제10조[납입기간의 계산]	수 정
제 3 장 신 고		
제10조[신고] 가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과 같이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	제11조[신고] 가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과 같이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수 정 수 정
제11조[통지] 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의 허락에 관하여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통지]	수 정
제 4 장 재 정		
제12조[납입금] ① 이사회는 이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자의 성별, 나이, 은퇴연금, 연금개시 나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한다.	제13조[납입금]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u>가입일 현재 적용 이율과</u> 가입자의 성별, 나이, 은퇴연금, 연금개시 나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한다. ③ 적용이율은 물가상승률과 시중금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적용이율은 가입일에 따라 적용된다.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수 정 수 정 추 가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 시에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기의 납입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을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단,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 시에는 매년 인상률을 적용한 만큼 월납입금을 인상하여 가입자	④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p>로부터 받는다.</p> <p>제13조[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p> <p>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교회가 50% 교역자가 50%씩 부담한다. 단, 교회형편에 따른다.</p> <p>② 제①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4조[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p> <p>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교회가 50% 교역자가 50%씩 부담한다. 단, 교회형편에 따른다.</p>	수 정 수 정
<p>제14조[납입방법]</p> <p>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p>	<p>제15조[납입방법]</p>	수 정
<p>제15조[납입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p> <p>① 가입자가 2회 이후의 납입금을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단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p> <p>② 제①항의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체된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p> <p>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7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p>	<p>제16조[납입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p> <p>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p>	수 정 수 정
<p>제16조[납입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p> <p>제1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는 해지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p>	<p>제17조[납입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p> <p>제16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는 해지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p>	수 정 수 정
<p>제17조[회계연도]</p> <p>연금 회계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18조[회계연도]</p> <p>이 연금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p>	수 정 수 정
<p>제18조[연금운용 및 방법]</p> <p>① 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p> <p>1. 금융기관에의 예입</p>	<p>제19조[연금운용 및 방법]</p>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제 5 장 급 여		
제 1 절 통 칙		
제19조[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은퇴급여 1. 은퇴연금 ㉠ 종신행 은퇴연금 ㉡ 확정형 은퇴연금 2. 은퇴연금일시금 3. 은퇴일시금 ② 장애일시금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장례비	제20조[급여의 종류]	수 정
제20조[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연금 수급권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금 수급권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	제21조[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재단은 소속 노회(기관)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금 수급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수 정 수 정 추 가 수 정 수 정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p>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1조[급여의 산정기초]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수령할 가입금액을 가입자가 설정하여 시작한다.</p>	<p>제22조[급여의 산정기초]</p>	수 정
<p>제22조[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한다. 단, 은퇴연금의 경우 산정과정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p>	<p>제23조[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한다. 단, <u>은퇴(유족)연금의 경우 산정과정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u></p>	수 정 수 정
<p>제23조[급여의 지급]</p> <p>① <u>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 단, 은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일 전월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u></p> <p>② 제①항의 과정에 의하여 은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③ <u>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u></p> <p>④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p> <p>⑤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p>제24조[급여의 지급]</p> <p>① <u>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단, 종신행 은퇴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u></p> <p>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p> <p>③ 제①항의 과정에 의하여 은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후 <u>신고한 경우</u>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④</p> <p>⑤</p> <p>⑥</p> <p>⑦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p>	수 정 수 정 추 가 수 정 수 정 추 가



현 행	개 정	비 고
<p>제24조[사망의 추정]</p> <p>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u>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u>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p> <p>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p>	<p>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25조[사망의 추정]</p> <p>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u>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u>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p>	수정수정
<p>제25조[수급권자의 범위]</p> <p><u>미지급의 급여 또는 제19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민법 상속순위(이하 같다)에 의한다.</u>(단, 제19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p>	<p>제26조[수급자의 범위]</p> <p>① <u>미지급의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다 음과 같다.</u> (단, 제20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p>② 제①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균분하여 지급한다.</p>	수정수정 추가
<p>제26조[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p> <p>① <u>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명의로 그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p>	<p>제27조[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p> <p>① <u>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는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u></p>	수정수정

현 행	개 정	비 고
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27조[해약환급금] 제15조 및 제43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시행 세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28조[해약환급금] 제16조 및 제4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시행 세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	수 정 수 정
제28조[부당이익의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29조[부당이익의 환수]	수 정
제29조[수급권자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수급자의 보호]	수 정
제30조[서류제출] 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서류제출]	수 정
제 2 절 은퇴급여		
제31조[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1.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10년의 보증지급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가 매월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2.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은퇴연금 수급권자가 연금개시 이 후 만 10년째 해당일에 생존할 경우 1개월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32조[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1.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 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수 정 수 정 삭 제 수 정
제32조[은퇴연금의 산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최저 250,000원 이상 최대 5,000,000원 이하로 가입자가 수령 할 가입금액을 설정한다.	제33조[은퇴연금의 산정]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33조[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은퇴연금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4조[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수 정
제34조[은퇴일시금] ① 연금개시 전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5조[은퇴일시금]	수 정
제 3 절 장애급여	제 3 절 장애일시금	수 정
제35조[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그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업무에 기인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에는 치료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 등급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수 정 수 정 수 정
제36조[장애일시금의 산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7조[장애일시금의 산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수 정 수 정
제 4 절 유족급여		
제37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증지급기간이 종료한 후에 해당 배우자가 생존 시에,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단, 확정형 은퇴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단, 확정형 은퇴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 정 수 정
제38조[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권자가 사	제39조[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	수 정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50으로 한다.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9조[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지급권은 지급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소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제40조[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지급권은 지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수 정 수 정
제40조[사망일시금]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1조[사망일시금]	수 정
제41조[사망일시금 산정] 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42조[사망일시금 산정]	수 정
제42조[장례비]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3조[장례비]	수 정
제 6 장 급여의 제한		
제43조[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7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최종 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 2.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 3. 중도 해약을 원하는 자	제44조[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수 정 수 정
제44조[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 가입 대상자가 가입 전에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전 질병 또는 부상 사유로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	수 정
제45조[지급의 환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정 제28조 부당이익의 환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1. 가입자가 장애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지급권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	제46조[지급의 환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정 제29조 부당이익의 환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2. 급여의 지급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	수 정 수 정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를 발생하게 한 때	를 발생하게 한 때	
제 7 장 보 칙		
제46조[시효] 이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47조[시효]	수 정
제47조[권익보호] 이 규정에 의하여 수급을 받는 자에게 규정을 변경 또는 신 규정을 제정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삭 제
제48조[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 제4항에 의한 국적상실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금개시 이전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금개시 이전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중신형)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수 정 수 정 수 정
5. 부 칙		
이 규정은 제96회 총회(2011.9)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 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수 정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	추 가
제 정 2011. 9.	제 정 2011. 9. 개 정 2022. 4.	

(6) 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연금 II 시행세칙

현 행	개 정	비 고
제 1 장 총 칙		
	제2조[적용이율 조정] 규정 제13조 ③항 적용이율 조정은 매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조정된 적용이율은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추 가
제 2 장 가 입		
제2조[가입신청] ①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자의 신상기록을 보관한다. ③ 연금 가입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3조[가입신청]	수 정
제3조[진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진단]	수 정
제 3 장 신 고		
제4조[신고] ①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령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상실 2. 개명 3. 근무지 이동 4. 주소 변경 5. 혼인(연금수령자) 6. 사망(연금수령자) 7. 기타	제5조[신고]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상실 2. 전직 3. 개명 4. 근무지 이동 5. 주소 변경 6. 혼인(연금수급자) 7. 사망(연금수급자) 8. 기타	수 정 수 정 및 추 가
제 4 장 급 여		
제5조[급여사유 확인] ① 규정 제2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0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제6조[급여사유 확인] ①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기관에서 발급한 은퇴확인서 및 소속증명서로 한다.	수 정 수 정 추 가 삭 제



현 행	개 정	비 고
<p>등록등본 등의 제출에 있어 급여를 받을 자의 자격 또는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6조[급여선택의 신고] 규정 제2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급여선택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급여선택의 신고]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할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수 정 수 정
<p>제7조[실종신고] 1. 규정 제24조 제①항에 의한 실종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2. 규정 제24조 제③항에 의한 환수 조치시의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을 준용한다.</p>	<p>제8조[실종신고] 규정 제25조 제③항에 의한 환수 조치 시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을 준용한다.</p>	수 정 삭 제 수 정
<p>제8조[수급순위] 규정 제25조 제①항에 의한 민법 상속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한다.</p>		삭 제
<p>제9조[미지급의 신청] 규정 제26조 제①항에 의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자”라 함은 세칙 제8조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p>		삭 제
<p>제10조[부당이익의 환수] 규정 제28조 및 제45조에 의한 환수시의 이자율은 세칙 제7조 제②항을 준용한다.</p>	<p>제9조[부당이익의 환수] 규정 제29조 및 제46조에 의한 환수시의 이자율은 세칙 제8조에 준용한다.</p>	수 정 수 정
<p>제11조[사망일시금 신청] 규정 제40조 제①항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p>	<p>제10조[사망일시금 신청]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p>	수 정 수 정
<p>제12조[장애일시금 신청] 규정 제35조 제①항에 의한 장애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p>	<p>제11조[장애일시금 신청] 규정 제36조 제①항에 의한 장애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p>	수 정 수 정
<p>제13조[장애등급] 규정 제35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별지 제5호 표와 같다.</p>	<p>제12조[장애등급인정] 규정 제36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p>	수 정 수 정
<p>제14조[장애등급 심사] 재단은 아래와 같이 장애등급을 심사할 수 있다. ① 규정 제35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정도의 심사는 재</p>		삭 제



현 행	개 정	비 고														
<p>단에서 행한다.</p> <p>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의 적당한 심사를 위하여 이사회는 장애 심사위원을 두거나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③ 재단은 제①항의 장애 정도의 심사에 앞서 재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p>																
<p>제15조[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p> <p>가입기간 중 규정 제15조, 제43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 제12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적용하여 그 원리금에서 가입시에 설정한 12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 적용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p> <p>해약환급금 =</p> $\text{납입금의 원금} - \frac{12 \times 10\text{년} - t}{12 \times 10\text{년}} \times 12\text{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 <p>(1) t : 납입경과 월수 (2) 단, 납입기간 10년 초과시엔</p> $\frac{12 \times 10\text{년} - t}{12 \times 10\text{년}} \times 12\text{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 = 0 \text{ 으로 함.}$	<p>제13조[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p> <p>가입기간 중 규정 제16조, 제44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 제13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적용하여 그 원리금에서 가입시에 설정한 12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 적용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p>	수 정 수 정														
<p>제16조[이자율]</p> <p>① 규정 제 15 조, 제 43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6 호 서식으로 한다.</p> <p>② 세칙 제 15 조의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납입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납입년수</th> <th>적용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10 년 이하</td> <td>1.0%</td> </tr> <tr> <td>10 년 초과</td> <td>1.5%</td> </tr> </tbody> </table> <p>③ 규정 제 33 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 34 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35 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 40 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2 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적용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은퇴연금일시금</td> <td>3.2%</td> </tr> </tbody> </table>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10 년 이하	1.0%	10 년 초과	1.5%	구분	적용 이자율	은퇴연금일시금	3.2%	<p>제14조[이자율]</p> <p>① 규정 제 16 조, 제 44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4 호 서식으로 한다.</p> <p>② 세칙 제 13 조의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납입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p> <p>③ 규정 제 34 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 35 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36 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 41 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3 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적용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은퇴연금일시금</td> <td>가입당시 적용이율</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 이자율	은퇴연금일시금	가입당시 적용이율	수 정 수 정 수 정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10 년 이하	1.0%															
10 년 초과	1.5%															
구분	적용 이자율															
은퇴연금일시금	3.2%															
구분	적용 이자율															
은퇴연금일시금	가입당시 적용이율															



현 행		개 정		비 고												
<table border="1"> <tr> <td>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td> <td>3.0%</td> </tr> <tr> <td>장애 2급</td> <td>2.5%</td> </tr> <tr> <td>장애 3급</td> <td>2.0%</td> </tr> </table>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	3.0%	장애 2급	2.5%	장애 3급	2.0%		<table border="1"> <tr> <td>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td> <td>가입당시 적용이율 - 0.2%</td> </tr> <tr> <td>장애 2급</td> <td>가입당시 적용이율 - 0.5%</td> </tr> <tr> <td>장애 3급</td> <td>가입당시 적용이율 - 1.0%</td> </tr> </table>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0.2%	장애 2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0.5%	장애 3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1.0%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	3.0%															
장애 2급	2.5%															
장애 3급	2.0%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0.2%															
장애 2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0.5%															
장애 3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1.0%															
제 5 장 재 정																
제17조[납입기일]		제15조[납입기일]		수 정 수 정												
<p>① 규정 제14조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납입 내용 기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속 기관명 나. 직명 다. 성명 라. 주민 번호 마. 납입 해당월 바. 납입 금액 3. 납입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p>		<p>① 규정 제15조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납입 내용 기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속 기관명 나. 직명 다. 성명 라. 주민 번호 마. 납입 해당월 바. 납입 금액 3. 납입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p>														
제18조[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제16조[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수 정 수 정												
<p>재단은 규정 제15조에 의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개인 연금 대출 이율 -2%' 를 준용한다</p>		<p>재단은 규정 제16조에 의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개인 연금 대출 이율 -2%' 를 준용한다</p>														
제19조[회계년도]		제17조[회계연도]		수 정 수 정 수 정												
<p>규정 제17조에 의한 회계년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12년 회계년도(2011.9.1~2012. 8. 31)</p>		<p>규정 제18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2년 회계연도(2021.9.1~2022. 8. 31)</p>														
제 6 장 보 칙																
제20조[국적상실자 등]		제18조[국적상실자 등]		수 정 수 정												
<p>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에 대한 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p>		<p>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에 대한 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p>														
6. 부 칙																
<p>이 규정은 제96회 총회(2011.9) 승인 후부</p>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연금II 규정 시행일로 시행한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터 시행한다. 제 정 2011. 9.	다. 제 정 2011. 9. 개 정 2022. 4.	
<별지 제 5 호> 장애 등급 표 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자 2.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4.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6.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기 못하는 자 8.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9.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써 항상 간호 또는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0.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써 장기에 걸쳐 안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간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삭 제



현 행	개 정	비 고
<p>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p> <p>6. <u>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자</u></p> <p>7. <u>양쪽의 리수후랑 관절 이상을 잃은 자</u></p> <p>8. <u>위의 1내지 7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u></p> <p>3급</p> <p>1. <u>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 자</u></p> <p>2. <u>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자</u></p> <p>3. <u>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u></p> <p>4. <u>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u></p> <p>5. <u>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u></p> <p>6. <u>한손의 5손가락을 잃은 자</u></p> <p>7. <u>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은 자</u></p> <p>8. <u>10발가락을 잃은 자</u></p> <p>9. <u>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 장애를 영구히 가진 자(추간판탈출증은 제외)</u></p> <p>10. <u>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u></p> <p>11. <u>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u></p> <p>12. <u>위의 1내지 11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u></p> <p>13. <u>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u></p> <p>14. <u>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u></p>		

(7) 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개인연금 대출 규정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조[목적] 연금가입자의 연금 불입한 <u>도내에서의</u> 단기 적 대출을 통해 연금가입자의 재정난으로 인 한 중도해약을 방지하고 긴급한 재정문제를 돕기 위함이다.</p>	<p>연금가입자의 단기적 대출을 통해 연금가입 자의 재정난으로 인한 중도해약을 방지하고 긴급한 재정문제를 돕기 위함이다.</p>	수 정
<p>제3조[대출의 대상 및 원칙] 대출은 납입금의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가 입자의 자녀학자금, 본인 교육비, 의료 및 긴 급한 자금 소요에 한한다.</p>	<p>대출은 납입금의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가 입자의 자녀학자금, 본인 교육비,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 소요에 한한다.</p>	수 정
<p>제4조[대출의 한도] 대출의 총액은 최저 50만 원 이상, 대출 신 청 시점 기준 가입자 총 납입금에서 시행세 칩 제21조에 의거 해약공제금액을 차감 후 50% 이내로 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미상환금액이 있을 경우 새로이 신청하는 대 출금액에서 미상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한다.(단, 재단에서 심사 후 승인 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p>	<p>대출의 총액은 최저 50만 원 이상, 대출 신 청 시점 기준 가입자 총 납입금에서 <u>실행세 칩(연금I 제16조 / 연금II 제13조)</u>에 의거 해약공제금액을 차감 후 50% 이내로 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미상환금액이 있을 경우 새로이 신청하는 대출금액에서 미상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한다. (단, 재단에서 심사 후 승인하는 경우에만 지 급 가능하다.)</p>	수 정
<p>제5조[인감의 청구] 대출을 할 때에는 미리 채무관계자의 인감증 명서를 받아야 한다.</p>	<p>대출을 할 때에는 <u>대출신청자로부터</u> 인감증명 서를 받아야 한다.</p>	수 정
<p>제6조[대출기간]</p> <p>① <u>대출기간은 최장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미 상환시 재단에서 심사 후 승인하는 경우 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u></p> <p>② <u>대출금은 대출기간에 따라 상환할 수 있 으며 약정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은퇴급여 및 해약환급금 등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한다.</u></p> <p>③ 제②항에 따라 대출기간 이내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금규정 제34조 제①항(<u>은퇴연금의 지 급</u>)과 같이 은퇴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퇴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퇴 연금일시금에서 미상환 원금과 이자를 공 제하고 차액만 지급한다.</p>	<p>① <u>대출기간 5년으로 하고 이자가 연체가 없 을 경우에 한하여 5년 단위로 연금개시 전까지 자동연장 된다. 다만 대출이자를 연체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u></p> <p>② <u>대출 중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대출금 은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에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은퇴급여 및 해약환급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 한다.</u></p> <p>③ 제②항에 따라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 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금규정 <u>연금의 지급(연금I 제34조 / 연금II 제32조)과 같이</u> 은퇴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퇴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미상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한다.</p>	수 정 수 정 수 정



현 행	개 정	비 고
<p>④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연체 시, 미상환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총 납입금의 90%를 초과할 경우 대출 이자 이체일에 계약을 해지한다.</p> <p>⑤ 제④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환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후, 연금규정 제 30 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대출자에게 지급한다.</p>	<p>④ 대출자가 장기연체 시, 미상환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총 납입금의 90%를 초과할 경우 대출 이자 이체일에 <u>연금</u>이 해지된다.</p> <p>⑤ 제④항에 따라 연금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미상환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후, <u>연금규정(연금I 제 30 조 / 연금II 제 28 조)</u>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대출자에게 지급한다.</p>	<p>수 정</p> <p>수 정</p>
<p>제7조[대출이율] 대출금의 이율은 연 6%로 한다.</p>		
<p>제8조[이자계산방법]</p> <p>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 대출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p> <p>② 이자의 계산단위는 십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십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이자계산방법]</p> <p>② 이자 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출원금에 미납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한다. (단, 대출원금은 변동 없음)</p> <p>③</p>	<p>추 가</p> <p>수 정</p>
<p>제9조[대출일수 계산] 대출일수는 대출 당일부터 기일(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일은 이자 계산일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9조[대출이자 납부 등]</p> <p>① 대출일수는 대출 당일부터 기일(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일은 이자 계산일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② 대출의 이율은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p> <p>③ 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재단이 정한 방법과 이자 납부일에 납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자 납부는 은행 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은행자동이체 납부일은 매월 5일이며, 최초 도래하는 5일에는 전달 말일까지 계산하여 자동이체 한다. 3. 이자 미납 시 재단은 그 다음 10일 단위(15일, 25일)로 재청구 한다. 4. 이자 청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이자를 청구한다. 	<p>추 가</p> <p>추 가</p> <p>추 가</p>

현 행	개 정	비 고
	<p>④ 이자 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한 방법에 따라 미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계산식 대출금 × 이자율 = 대출이자(정상이자) 미납된 대출이자(정상이자) × 이자율 = 가산이자</p> </div> <p>된 대출이자에 가산이자를 부과한다.</p> <p>⑤ 대출일에 대출금이 상환되는 경우 1일분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추 가</p> <p>추 가</p>
<p>제10조[상환 방법]</p> <p>① 개인대출의 원금은 약정기일에 전액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 전액 상환 및 일부 상환도 가능하다.</p> <p>② 개인대출의 이자는 매월 5일에 자동이체 하되 최초 도래하는 5일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자동이체 한다.</p>	<p>개인대출의 원금은 약정기일에 전액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 전액 상환 및 일부 상환도 가능하다.</p> <p>②</p>	<p>수 정</p> <p>삭 제</p>
<p>제13조[기타 사항]</p> <p>연금규정 제18조(납입금의 납입 연체시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격이 중단되거나 <u>연금규정 제50조(급여의 제한)</u>에 따라 해약환급금 수령시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대출 원리금을 상계한다.</p>	<p>연금규정 납입금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연금I 제18조 / 연금II 제16조)에 따라 자격이 중단되거나 연금규정 급여의 제한(연금I 제50조 / 연금II 제44조)에 따라 해약환급금 수령 시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대출 원리금을 상계한다.</p>	<p>수 정</p>
	<p>7. 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에 보고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p>	<p>수 정</p> <p>추 가</p>
<p>제 정 2003. 9. 부분개정 2011. 9.</p>	<p>제 정 2003. 9. 부분개정 2011. 9. 부분개정 2022. 4.</p>	



2) 기금/연금 현황

전기 : 2020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

당기 : 2021년 9월 1일 ~ 2022년 7월 31일

(1) 기금

① 가입 현황

전기말	신규	폐 교	현재	증감
4,550교회	147	89	4,608교회	58

② 수급자 현황

구 분	(전기)			(당기)		
	인원	금액(月)	금액(年)	인원	금액(月)	금액(年)
은퇴기금급여	221	20,270,000	237,835,000	227	20,915,000	224,655,000
유족기금급여	2	25,000	300,000	2	25,000	275,000
은퇴일시금기금급여	2	0	3,500,000	3	0	3,300,000
합 계	225	20,295,000	241,635,000	232	20,940,000	228,230,000

(2) 연금

① 가입 현황

전기말	신규	중도지급			연금지급			현재	증감
		일시금	해약	소계	퇴직	유족	소계		
1,699명	378	10	48	58	30	1	31	1,988명	289

② 수급자 현황

구 분	(전기)			(당기)		
	인원	금액(月)	금액(年)	인원	금액(月)	금액(年)
은퇴연금급여	246	128,263,000	1,462,858,000	274	147,427,000	1,524,519,000
특례연금급여	35	9,628,500	116,600,000	34	9,530,500	105,227,500
유족연금급여	15	3,357,000	32,184,000	16	3,779,000	37,901,000
은퇴연금일시금	1	0	96,080,000	3	0	233,931,000
은퇴일시금	6	0	108,283,000	2	0	50,953,600
사망일시금	2	0	64,750,000	5	0	151,638,400
합 계	305	25,811,800	1,880,755,000	334	160,736,500	2,104,170,500

3) 결산 보고

(1) 대차대조표

전기 : 2020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

당기 : 2021년 9월 1일 ~ 2022년 7월 31일

계정과목	(당기)		(전기)	
	당기금액	합 계	당기금액	합 계
자산				
I. 유동자산		335,199,994		398,624,369
(1) 당좌자산		335,199,994		398,624,369
현금				107,260
보통예금		72,577,673		170,328,449
선급법인세		262,622,321		228,188,660
(2) 재고자산				
II. 비유동자산		43,157,160,125		38,968,653,637
(1) 투자자산		43,156,590,763		38,968,084,275
종합예금		1,650,000,000		2,063,843,362
단기대여금		136,000,000		111,000,000
장기금융상품		40,791,430,763		36,152,220,913
개인회원보조금		579,160,000		641,020,000
(2) 유형자산		569,362		569,362
비품	5,700,240		5,700,240	
감가상각누계액(비품)	(5,130,878)	569,362	(5,130,878)	569,362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43,492,360,119		39,367,278,006
부채				
I. 유동부채		180,868,010		30,260,390
예수금		1,142,097		1,231,977
가수금		179,725,913		29,028,413
II. 비유동부채		41,418,289,661		38,585,408,014
퇴직급여충당금		106,220,955		106,220,955
기금책임준비금		9,853,015,054		9,512,036,616
연금책임준비금		31,459,053,652		28,967,150,443
부 채 총 계		41,599,157,671		38,615,668,404
자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1,893,202,448		751,609,602
전기이월이익잉여금		751,609,602		398,312,370
당기순이익	1,141,592,846		353,297,232	
자본 총계		1,893,202,448		751,609,602
부채와 자본 총계		43,492,360,119		39,367,278,006



(2) 손익계산서

전기 : 2020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

당기 : 2021년 9월 1일 ~ 2022년 7월 31일

계정과목	(당기)		(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8,620,623,328		7,522,214,122
수입이자	1,704,499,714		1,465,120,099	
납입금수입	4,867,744,388		4,446,665,505	
기타수익	2,048,379,226		1,610,428,518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8,620,623,328		7,522,214,122
IV. 판매비와관리비		7,524,470,875		6,906,725,801
복리후생비	6,792,850		12,825,050	
교통비	896,500		672,800	
기본급	64,840,000		63,674,170	
상여금	26,712,500		23,185,000	
접대비	1,988,000		2,589,500	
통신(전화, 인터넷)	1,185,840		1,258,160	
제수당	31,074,776		29,292,780	
퇴직급여			14,317,909	
세금과공과	4,914,300		4,379,270	
감가상각비			610,042	
보험료	2,620,270		2,550,450	
사무비(문구류)	1,847,980		1,434,550	
소모품비			237,520	
지급수수료	20,742,040		25,158,776	
광고비	8,690,000		1,878,800	
회의비	3,733,500		4,116,500	
전입액	4,867,744,388		4,446,665,505	
연금급여	2,117,900,422		1,898,743,820	
기금급여	228,265,000		241,020,000	
경조비	380,000		580,000	
교육비	2,400,000		4,250,000	
우편료	13,512,225		12,670,197	
인쇄비	7,080,192		5,804,699	
잡비	2,718,540		4,040,200	
S/W유지관리비	16,115,000		15,180,000	
S/W개발비	2,200,000		8,250,000	
부담금(연합기관)	900,000		510,000	
기금관리운영비	89,216,552		80,830,103	
V. 영업이익		1,096,152,453		615,488,321
VI. 영업외수익		68,511,152		190,640,849
이사부담금	3,500,000		3,000,000	
잡수입	65,011,152		187,640,849	
VII. 영업외비용		23,070,759		65,891,238

계정과목	(당기)		(전기)	
	금 액		금 액	
잡손실	2		3,692,406	
선취이자상각	23,070,757		62,198,832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141,592,846		740,237,932
IX.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386,940,700
법인세등			364,929,720	
소득세등			22,010,980	
XI. 당기순이익	1,141,592,846		353,297,232	

(3) 총자산 현황 요약

구 분	(당기)	(전기)
현 금	0	107,260
보통예금	72,577,673	170,328,449
종합예금	1,650,000,000	2,063,843,362
장기금융상품	40,791,430,763	36,152,220,913
개인회원보조금 외	715,160,000	752,020,000
합 계	43,229,168,436	39,138,519,984